

법률칼럼

[남호진변호사] 유류분의 계산, 증여재산과 관계 및 반환범위

■ 유류분

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이라 한다. 민법 제1115조에 의하면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 한다.

■ 증여 증여재산과 유류분과의 관계

□ 상속채무, 특별수익을 고려한 계산식

유류분 부족액 = {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(A) ×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(B)} -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(C) -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(D)

A = 적극적 상속재산 + 증여액 - 상속채무액

B =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/2

C =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+ 수유액

D =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- 상속채무 분담액

(출처 : 서울고등법원 2010.04.30. 선고 2009나16058 판결 종합법률정보 판례)

□ 상속채무 변수 고려하지 않은 단순계산

$[(\text{증여재산} * \text{상속재산}) * \text{법정상속분}] * \frac{1}{2}$

■ 증여재산과 유류분과의 관계

□ 제3자에 대한 증여

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.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.

□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

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이 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.

□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, 증여자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라도 증여하고 남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점과 증여자의 재산이 증여 후 증가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.

■ 소멸시효

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,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다.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. 단순히 일방적으로 교부된 위 망인의 자필 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(대법원 2006.11.10. 선고 2006다46346 판결)

■ 유증 및 증여를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유류분 반환범위(2010다42624,42631 판결)

민법 제1115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.

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,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(유증받은 재산)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(증여재산)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. 이 경우에는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부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부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이 유증받은 재산으로 반환해야 한다. (대법원 2013.3.14. 선고 2010다42624,42631 판결)